

의 안 번 호	제 호
의결연월일	2023. 4. .

의 결
사 항

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(안)

발의연월일	2023. 4. .
발 의 자	강승수 의원 외 11명

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3. 4. .

발 의 자 : 강승수·김영갈·김영태·김원섭
김정도·김춘남·박세채·신용하
양진오·이정화·이지연·정지원
의원 (12명)

1. 제안이유

대구경북신공항의 핵심 배후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공항경제권 중심의 도시건설을 추진하고 공항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공항경제권 중심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의회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함.

2. 내 용

가. 구성인원 : 12명(위원장 1명, 간사 1명, 위원 10명)

나. 존속기간 :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

다. 활동내용 :

- 공항경제권 중심 도시건설 방안
- 대구경북신공항으로의 편리한 접근성 착안 방안
- 항공물류 거점 기반구축 방안
- 미래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 방안

3. 관련법령

가. 지방자치법 제64조(위원회의 설치)

나.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(특별위원회)

관련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□ 「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」

제7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<삭제 2022.6.15>

③<삭제 2022.6.15>
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